#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
#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대책

2020. 4. 3.

※ 타부처 지원대책의 경우 발표시점별 현행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대책별 세부 지원사항은 각 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본 자료는 주 1회 보완함)

문화체육관광부

## 목 차


Ⅰ. 금융지원 ····· 1

1.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····· 1
2.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 ····· 1
3.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····· 2
4.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····· 2
5.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····· 3
6.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 ····· 3

Ⅱ. 고용지원 ····· 4

1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····· 4
2.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····· 5

Ⅲ. 세정지원 ····· 6

1.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····· 6
2.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····· 6
3.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 ····· 7

Ⅳ. 보증지원 ····· 8

1.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····· 8
2.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····· 8

# 목 차


Ⅴ. 경영지원(기타지원) ····· 9

1.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····· 9
2.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 ····· 9
3.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····· 9
4.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····· 10
5. 카드사 혜택확대 ····· 10

[참 고] 시 · 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현황 ····· 11


# Ⅰ. 금융 지원

## 1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

○ **(대상)**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*

* 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 (업종정보 홈페이지 참조)

○ **(지원내용)**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(4,450억원→5,250억원) 및 조기지원을 위한 인력충원*

* 신속한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(2.17.~, 10명) 및 보조인력 배치(3.2.~, 50명), 융자집행 주기 축소(3.3.~, 주1회→주2회) 등 기 조치

**<관광기금 일반융자 지원내용>**

- (융자금리) 대기업 및 중견기업(2.25%) 중소기업, 공공법인 및 개인(1.5%)
- (지원한도)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 (최대 신청 한도 : 30억원)
- (상환기간)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○ **(신청절차)** 분기별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 접수

* 2분기 접수기간 종료(~3.30.), 3분기 신청 추가공지 예정

○ **(담당기관)** 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☏ 02-2079-2446~7, http://www.ekta.kr/)

* 시·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접수가능

## 2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

○ **(대상)** 관광기금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

○ **(지원내용)** 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 (약 2천억원 규모)

*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 상환유예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

○ **(신청절차)** 旣대출 은행(각 취급은행 영업점)에 직접 신청

## 3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

○ **(대상)**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~8등급 관광사업체

*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트결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
○ **(지원내용)** 사업체 운영비(인건비, 임차료 등) 특별융자(총 1,000억원 규모)

- (융자금리*) 1.0% / (지원한도) 2억원 내 / (상환기관) 3년거치 3년상환

*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

○ **(접수기간)** '20.2.19.(수) ~ '20.11.30.(월)

○ **(신청절차)** 신용보증재단 영업점(전국 144개)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접수, 이후 융자금 신청은 '20.12.11.(금)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

○ **(담당기관) 신용보증재단(1588-7365), 한국관광협회중앙회(02-2079-2446~7)**

*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할 영업점 문의 요망 (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)

## 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

○ **(대상)**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3개월이상 거주자(개인), 자본금 50억원 미만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된 업체(법인)

- (특별융자) 「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

- (상환유예)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

○ **(지원내용)** 금리(0.75%), 경영안정자금 및 건설·개보수자금 융자

* 금리는 분기별 변동, 융자한도는 개인 6~12억원 이내, 법인 12~24억원 이내 (업종별, 자금용도별 상이)

○ **(접수기간)** 특별융자(2.20.~5.18.), 상환유예(3.2.~5.18.), '20.6.30.이내 융자실행

○ **(신청절차)**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 지원 (선착순)

* 상환유예는 거래은행과 상의 후 접수 (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유예여부결정)

○ **(담당기관)**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☏ 064-740-6095~7/6084



## 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

○ **(대상)**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(신용 1~10등급)

○ **(지원내용)** 시중은행(신용 1~3등급 대상, 기업은행제외), 기업은행(3~6등급 대상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~10등급 대상) 세 기관이 분담하여 총 12조원 대출

- (융자금리) 1.5%(세 기관 모두 동일)

- (지원한도) 시중은행 3천만원, 기업은행 1억원, 소진공 2천만원

- (상환기간) 시중은행 1년, 기업은행 최장 8년, 소진공 2년거치 3년상환

○ **(접수기간)** 접수 시작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

-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

-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 (4.6. 심사시작)

- 소진공 경영안전자금 : '20.3.25.(수) ~ 예산소진 시 (3.25.~31. : 시범운영)

○ **(신청절차)** 각 담당기관에 문의 후 방문

○ **(담당기관)**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*

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☏ 042-363-7210/7230)

## 6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

○ **(대상)** 저신용(6등급 이하, 무등급포함)자 및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,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

○ **(지원내용)** 금리4.5%이내, 최장 5년, 2천만원 한도 (총 4,400억원 규모)

| 구분 | 창업자금 | 운영자금 | 시설개선자금 | 긴급생계자금 |
|---|---|---|---|---|
| 대출한도 | 7천만원 | 2천만원 | 2천만원 | 1천만원 |
| 대출기간 | 6년이내 | 5.5년이내 | 5.5년이내 | 5년이내 |
| 금리 | 4.5% | 4.5% | 4.5% | 4.5% |

*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자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

○ **(담당기관)** 서민금융진흥원 (☏1397)

# Ⅱ. 고용 지원

##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○ **(지원대상)**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*한 사업주**

매출액 15%감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완화

*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), 그 외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

○ **(지원규모)** 약 5,004억원 (지원금 일시상향)

○ **(지원조건)** 총 근로시간의 20%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| 종류 | 지원조건 | 지원수준 |
|---|---|---|
| 휴업 | 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|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 등의 3/4 (대기업 2/3) 지원<br>*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 |
| 휴직 |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| |

○ **(지원내용)** 휴업·휴직 수당 **지원비율 한시적 상향**('20.2.1.~7.31.), **특별고용업종 지정**

| 종류 | 일반업종 상향 (2.1~7.31) | 특별고용지원업종 (3.16~9.15) |
|---|---|---|
| 중소기업 | 2/3(66.7%) → 3/4(75%) | 9/10(90%) |
| 대기업 | 1/2(50%) → 2/3(66.7%) | 2/3(66.7%)~3/4(75%) |

* 여행업·관광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3.16.)

○ **(신청절차)**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|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| → | 고용유지조치 실시 | → | 지원금 신청 (매월) | → |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주 → 고용센터 | | 사업주 | | 사업주 → 고용센터 | | 고용센터 |

○ **(담당부처)**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상담센터 ☎1350)



## 2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

○ **(지원대상)**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·기업

○ **(유형별 지원방안)** 총괄표 참조 (납부유예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)

| | 건강보험 | 국민연금 | 고용보험 | 산재보험 |
|---|---|---|---|---|
| | 3월 부과분 납부기한(~4.10.) | | | |
| 납부유예 (신청 시) | - | • **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** (소득감소 요건 충족)<br>• **3개월 납부예외 확대**<br>• **3~5월 부과분** (~4.15.까지 신청 시)<br>* 3월 부과분 既납부시 5월 환급<br>* 4~6월분은 ~5.15일까지 신청 시 유예 가능 | • **30인미만 사업장**<br>• **3개월 납부기한 연장**<br>• **3~5월 부과분** (~5.10.까지 신청 시)<br>* 단, 既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| • **30인미만 사업장** + 1인 자영업자 + 특고<br>• **3개월 납부기한 연장**<br>• **3~5월 부과분** (~5.10.까지 신청 시)<br>* 단, 既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|
| 감면 | • **보험료 하위20~40%**<br>* 하위20% 既감면(50%)<br>• **3개월 30% 감면**<br>• **3~5월 부과분**<br>*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既발송→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| - | - | • **30인미만 사업장** + 1인 자영업자 + 특고<br>• **6개월 30% 감면**<br>• **3~8월 부과분**<br>*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既발송→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|
| 담당부처 |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|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|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|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|
| 문의 (누리집) |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 | 국민연금관리공단 (☎1355) | 고용노동부상담센터 (☎1350) | 근로복지공단 (☎1588-0075) |
| | https://www.nhis.or.kr | https://www.nps.or.kr/ | https://www.ei.go.kr | https://www.kcomwel.or.kr |

# Ⅲ. 세정 지원 (내국세, 지방세, 관세)

## 1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○ **(지원대상)** 자영업자,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*

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·관광·여행·공연·음식·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○ **(지원내용)**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법인세(3월 확정신고), 부가가치세(4월 예정신고) 등 신고·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
- (징수·체납처분 유예)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,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
- (세무조사 연기)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, 세무조사가 사전통지·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
- (전담대응반 운영)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」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 지원

○ **(시행시기)** 즉시 시행

○ **(담당부처)**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(☏국번없이 126, 3번→2번)

## 2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○ **(지원대상)**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(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 / 유흥업소 제외)

○ **(지원내용)**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※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

- (신고·납부 기한 연장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
  *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
- (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- (세무조사 유예)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

○ **(시행시기)** 행안부 → 지자체 지침 통보(2.5일)

○ **(담당부처)**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관할 지자체 세정과



## 3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

○ **(지원대상)**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

○ **(지원내용)**

- (납기연장·분할납부)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·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 (2.6.~)
- (당일 관세환급)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/L(Paperless)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·지급 (2.6.~)
- (관세조사 등 유예)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,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 (2.6.~)
- (애로해소센터 운영)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(즉시 시행)

  * 인천·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평택에 「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」 설치

○ **(담당부처)** 관세청 심사정책과 (☏ 042-481-7863, 국번없이 125, 20번→2번)

# Ⅳ. 보증 지원

## 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

○ **(대상)**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
○ **(지원내용)**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함

| | 소상공인 | 피해기업 | 중소기업 |
|---|---|---|---|
| 지원한도 | 7천만원(5년 이내), | 3억원 | 신용보증기금 문의 |
| 보증비율 | 상향조정(85%→100%) | 상향조정(85%→95%) | 상향조정(85%→95%) |
| 보증료율 | 0.8% | 1.0% | 기존 보증료율 대비 0.2%p 우대 |
| 기타 지원 | | | 심사 간소화 |
| 문의 | 지역 신용보증재단 (☏1588-7365) | 기술보증기금 (☏1544-1120) | 신용보증기금 (☏1588-6565) |

## 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

○ **(대상)**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받은 기업

○ **(지원내용)**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보증기한 연장

- (지역신보) '20.6.30. 이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보증기한 연장(1년)
- (신용보증기금) '20.9.30.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보증 전액 만기연장

○ **(신청절차)**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및 신청 / 신용보증기금 전화 신청

**<전국 주요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락처>**

| 지역 | 전 화 번 호 | 지역 | 전 화 번 호 | 지역 | 전 화 번 호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서울 | 1577-6119 | 부산 | 051-860-6600 | 강원 | 033-260-0001 |
| 대구 | 053-560-6300 | 인천 | 1577-3790 | 충남 | 041-530-3800 |
| 광주 | 062-950-0011 | 대전 | 042-380-3800 | 전남 | 061-729-0600 |
| 울산 | 052-289-2300 | 경기 | 1577-5900 | 경남 | 1644-2900 |
| 충북 | 043-249-5700 | 전북 | 063-230-3333 | 경북 | 054-474-7100 |

* 신용보증기금 (☏1588-6565)



# Ⅴ. 경영지원(기타 지원사항)

## 1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

○ **(대상)** 호텔업종 및 유원시설업종

○ **(지원내용)**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 및 수수료 등 감면

- (심사유예)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* (기존 등급 유효기간 연장)

  * 매 3년마다 등급심사 필요 → '20년 약 352개 업체 대상 (총 심사비용 약 6.2억원)

- (수수료 등 감면)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% 감면* 및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임대료 감면 독려

  *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(1~20만원) 및 안전성검사(22~60만원) 필요

○ **(담당부처)**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

## 2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

○ **(대상)** 여행업계 및 마이스업계

○ **(지원내용)** 업계종사자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제공

- (여행업) 휴업·휴직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* 추진 (7.5천명)

  * 분야별 직무 역량강화, 소규모 여행사 맞춤형 전문 교육 등

- (마이스)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지원 (200명)

  * 3년 미만 경력자, 경력단절자, 마이스교육 수료자, 컨벤션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 대상

○ **(신청절차)** 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

○ **(담당부처)**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(☏ 044-203-2879~2880)

## 3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

○ **(대상)** 관광벤처기업, 관광분야 유관기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

○ **(지원내용)**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지원대책 안내 및 경영상 애로사항 접수, 기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 상세 안내

○ **(담당기관)**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(02-729-9454/9494)

## 4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

○ **(대상)** 공항상업시설* 입주기업

* 면세점, 음식점, 은행, 환전소, 편의점, 급유, 기내식 등 포함

○ **(지원내용)**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%로 상향(25%→50%)하고, 대·중견기업 임대료 20% 신규 감면

○ **(지원기간)**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%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용 (3~8월, 3월분 소급)

○ **(담당기관)** 인천공항공사(☏ 1577-2600), 한국공항공사(☏ 1661-2626)

## 5 카드사 혜택 확대

○ **(대상)**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 (연매출 5억원 이하)

○ **(지원내용)**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(카드사별 상이)

* 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

* 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

○ **(신청절차)** 각 카드사 문의 (신한, 국민, 삼성, 현대, 비씨, 하나, 우리, 롯데)

* 신한카드(1544-0887), 국민카드(1588-1688), 삼성카드(1588-8700), 현대카드(1577-6000), 비씨카드(1588-4000), 하나카드(1800-1111), 우리카드(1588-9955), 롯데카드(1588-8100)



## 참 고 시·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

| 구분 | 추진 내용 | 피해신고센터 |
|---|---|---|
| 서울 | ‣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·운영<br>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,000억원) 및 특례보증(5,000억원) 지원<br>‣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(2.14.) | 서울 기업지원센터<br>(02-2133-3119) |
| 부산 | ‣ 민·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·운영<br>‣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(4,000억원) 및 피해기업(소상공인) 특례보증(150억원) 지원<br>‣ 피해기업 추가자금(1,000억원) 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 기탁(BNK, 100억원) | 부산경제진흥원 피해지원센터<br>(051-660-1713~6)<br>부산상공회의소 피해지원센터<br>(051-990-7063~6) |
| 대구 | ‣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.운영<br>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00억원) 및 특별보증(200억원) 지원<br>‣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추진 |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<br>(053-803-1119) |
| 인천 | ‣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 상황실 구성·운영<br>‣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(650억원)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(250억원) 지원<br>‣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| 경제대책상황실<br>(032-440-8242~3) |
| 광주 | ‣ 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·운영<br>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,300억원) 및 특례보증(732억원) 지원<br>‣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(2.12.) | 코로나19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<br>(062-960-2624) |
| 대전 | ‣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(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)<br>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420억원) 지원<br>‣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 특별배정 및 피해기업 세제 지원 등 |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<br>(042-380-3035) |
| 울산 | ‣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<br>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200억원) 지원<br>‣ 지방세 지원, 울산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(결제금액 3% 포인트 추가지급) | 지역경제·산업 대응센터<br>(052-229-2720)<br>자동차업종 대응지원센터<br>(052-219-6623) |
| 세종 | ‣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50억원) 확보<br>‣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편성(154백만원)<br>‣ 지방세 지원(신고·납부 기한 연장,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) |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<br>(044-300-4143) |

| 구분 | 추진 내용 | 피해신고센터 |
|---|---|---|
| 경기 | ▸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·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,000억원) 및 특례보증(8,500억원) 지원<br>▸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(2.6) |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 (소상공인) (1600-8001)<br>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 (중소기업) (031-259-6119) |
| 강원 | ▸ 민·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·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700억원) 지원<br>▸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(2.13.) |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(033-249-2734)<br>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(033-249-2757) |
| 충북 | ▸ 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・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억원) 및 특례보증(50억원) 지원<br>▸ 지방세 지원,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 확대 추진 | 기업 피해 신고센터 (043-220-3463) |
| 충남 | ▸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・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6,624억원) 지원<br>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(2.13.) |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(041-539-4592) |
| 전북 | ▸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·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0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<br>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,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율 확대 추진 | 기업·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(063-711-2012) |
| 전남 | ▸ 경제상황 대응 T/F 구성·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.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400억원) 지원<br>▸ 지방세 지원, 시.군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| 중소기업·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 (061-288-3833) 중소기업 (061-729-0651) 소상공인 |
| 경북 | ▸ 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/F단 구성·운영<br>▸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(당초 300억원 → 1,200억원 증액)<br>▸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·신규시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원 지원 | 기업 피해신고센터 (054-880-2671) (054-880-2674) |
| 경남 | ▸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<br>▸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(4개사업 318억원) 조기 시행 | 경상남도 기업·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(1899-1745) |
| 제주 | 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「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」출범(2.13.)<br>▸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9,000억원) 및 특례보증(1,000억원) 지원<br>▸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,700억원 특별 지원 (특별융자 3,000억원, 상환유예 2,700억원) | 기업애로 신고센터 (064-710-2522)<br>수출기업애로 신고센터 (064-757-2811) |